

공정노동기준법 (FLSA)상 근로자 권리

연방 노동부 임금시간과

연방최저임금

\$7.25 시간당

2009년 7월24일부터

오버타임

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업무시간에 대해 시간당 임금의 1.5배

미성년자 노동

농장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은 16세 이상
그리고 노동부 장관이 위험하다고 선포한 직종에서는 18 세 이상이
되어야 한다.

14, 15세 청소년은 제조, 탄광직이 아닌 여러 비위험 직업에서 정규수업의 시간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일할 수 있다:

- 개학기간중 하루 3시간 또는 일주일에 18시간까지
- 방학기간중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까지

또한 6월1일부터 노동절까지는 오전 7시전 또는 오후 7시 이후에 일할 수 없고 노동절 이후에는 오후 9시 이후에 일할 수 없다. 농업부문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.

팁공제

고용주가 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팁을 받는 종업원에게 현금임금으로 최소한 \$2.13 을 지불해야 한다. 만약 종업원의 팁과 최소한 \$2.13 의 현금 임금을 합쳤을때 연방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고용주는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. 또한 다른 조건들도 맞아야 한다.

법집행

연방노동부는 노동법 위반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행정적으로 또는 소송을 통해 밀린 임금을 되찾아줄 수 있다. 노동법 위반시 민사 또는 형사상 처분이 가능하다.

고용주가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규정을 고의적으로 또는 반복해 위반한 경우 위반건당 최고 \$1,100, 미성년자 고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 일인당 최고 \$11,000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. 또한 미성년자 고용규정 위반으로 미성년자가 사망하거나 심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위반건당 최고 \$50,000 , 이 때 고의적 또는 반복해 위반한 경우 최고 \$100,000 까지 두 배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.

공정노동기준법은 또한 법집행 절차에 참여하거나 신고한 종업원에 대한 차별이나 해고를 금지한다.

추가정보

특정 직업과 사업장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규정에서 면제된다.

- 아메리칸 사모아와 북마리아나제도의 근로자에겐 특별규정이 적용된다.
- 일부 주에서는 보다 강한 근로자 보호법을 제공하므로 고용주는 연방과 주법을 둘 다 따라야 한다.
- 고용주는 이 포스터를 종업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.
- 20세 미만의 종업원에게는 고용후 처음 90일 동안은 시간당 \$4.25를 지불할 수 있다.
- 일부 풀타임 학생, 학생실습생, 견습생, 장애를 가진 종업원은 연방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특별 허가증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 아래로 지불할 수 있다.



보다 자세한 사항은

1-866-4-USWAGE

(1-866-487-9243)

TTY: 1-877-889-5627



U.S. Wage and Hour Division

WWW.WAGEHOUR.DOL.GOV